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5월 30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: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·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내 체육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관리·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

지고 있으며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이 일부 개정(2023.9.14.)됨.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를 의무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발의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필요 조치 의무를 규정 후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
-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서는 밀집 인원 기준을 1천명으로 정하고, 체육 행사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는 바, 본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개정 내용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(區)에서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및 그 내용, 수립 절차, 안전교육, 점검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즉 우리 구(區)에서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 행사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·안전요원은 체육행사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.
- 체육행사는 체육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공연장, 안양천(마라톤 등)에서도 개최될 수 있어 물리적 안전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행사의 개최 및 진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27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5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양송이, 김지연
정선회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, 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, 관련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관내 체육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관리,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등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2 신설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의2, 「국민체육진흥법
시행령」 제11조의9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) 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(이하 “체육행사개최자”라 한다)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체육 행사의 종목, 유형,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
2.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
3. 안전관리책임자(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안전관리자(안전요원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명 및 역할
4.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
5.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

6.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

7.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

8.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 종료 시 까지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) ①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(이하 “체육행사개최자”라 한다)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안전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안전교육·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체육 행사의 종목, 유형,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</u> <u>2.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및 시설</u> <u>3. 안전관리책임자(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안전관리자(안전요원을 지휘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성명 및 역할</u> <u>4.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</u>

보 및 배치 방안

5.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

6.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 및 협조 방안

7.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

8.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행사개최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④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4의2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체육 행사 개최일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⑤ 체육행사개최자는 안전관리

계획 수립 이후부터 체육 행사
종료 시까지 「국민체육진흥법
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의13서식
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
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
다.